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40
----------	-------

발의연월일 : 2026. 5. 13.

발 의 자 : 이수진·김 윤·박희승  
김남희·김태년·서영석  
이학영·임오경·송옥주  
박해철·전종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권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고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신청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있는 국민이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권 또는 사회보장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직권주의와 신청주의를 병행하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지원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가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을 “제1항,”으로, “신청 시”를 “신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간주 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지원”을 “지원, 신청 간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서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권자로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에”를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려는 경우 또는 제5조에”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조에”를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려는 경우 또는 제5조에”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기본원칙) ① <u>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u></p> <p>② <u>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③ ~ ⑥ (생략)</p> <p>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 ③ (생략)</p> <p><u>&lt;신설&gt;</u></p>	<p>제4조(기본원칙) ① <u>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지원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가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u></p> <p>② <u>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u></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u></p>

④ (생략)

⑤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신청 지원 및 고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서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권자로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 제1항, ----- 신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간주 시 -----  
-----.

1. ~ 3. (현행과 같음)

⑦ ----- 제6항까지 -----  
----- 지원, 신청 간주 -----  
-----.

제6조(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  
-----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려는 경우 또는 제5조에 -----  
-----

1. ~ 3. (생략)

제7조(수급자격의 조사)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배우자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하고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4. (생략)

② ~ ⑦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수급자격의 조사) ① -----  
----- 직권으로 사회보장  
급여를 지급하려는 경우 또는  
제5조에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